

시 민

문서번호	장애인자립지원과-1779	주무관	장애인자립정책팀장	장애인자립지원과장	복지정책관	복지건강실장
결재일자	2013.2.4.			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	
방침번호		협 조				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## 2013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계획

희망서울  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2013. 2

복 지 건 강 실  
(장애인자립지원과)

## 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■ ( 중증장애인지립 생활지원센터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■ ( 중증장애인지립 생활지원센터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
# 2013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계획

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

## I 사업 개요

###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53조(자립생활지원), 제54조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)

### 추진경위

- '02년 시비자체사업(5개소, 330백만원) ※ 서울시 전국 최초 실시
- '05년 정부시범사업(3개소, 450백만원), 시비자체사업 (5개소, 309백만원)
- '09년 센터수 확대지원 ('08년 22개소 → '09년 24개소)
- '10년 3월 체험프로그램 5개소 시범 운영 : 광진, 서초, 양천, 서울,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
### 사업내용

- 사업주체 :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, 단체
- 주요사업 : 동료상담, 자립생활기술훈련, 정보제공 및 의뢰, 권익옹호 등

- ❖ 동료상담 :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으로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(장애수용)등을 목적으로 함
- ❖ 자립생활기술훈련 :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, 활동보조서비스 관리, 개인 재정관리,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
- ❖ 정보제공 및 의뢰 :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·정책,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 알선하는 활동
- ❖ 권익옹호 : 개인적·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, 법률자문지원

- 지원절차 : 공고 ⇨ 신청접수(자치구) ⇨ 서류심사(자치구) ⇨ 최종심사(서울시) ⇨ 선정

### '13년 사업비 : 3,840백만원(12년 2,617백만원, 증 1,223백만원)

- ※ 재원부담 : 국비 420,000천원, 시비 3,420,720천원

## II

# '12년 추진성과

### □ 추진실적

- '1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IL센터 사업비 지원 : 24개소 2,360백만원 지원
  - 동료상담 2,370명, 자립생활기술훈련 2,346명 등 총 88,618명 지원  
(단위 : 명, 회)

구분	계	기본사업				선택사업					중점 추진 사업 (국고지원센터)	
		동료상담	자립생활기술 훈련	권익호	정보 제공과 의뢰	활동보조	주거 서비스	이동 서비스	보조 기구 관리	기 타	사례관리	거주시설 장애 인 자립 지원
인원	88,618	2,370	2,346	36,503	35,990	4,799	139	869	778	4,303	183	338
횟수	48,344	4,302	1,058	1,556	32,162	3,970	458	1,33	1,212	1,647	1,761	85

※ 단, 활동보조서비스는 IL사업 공모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님

-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
  - ▶ 장애청소년 ILP 'DREAM SCHOOL'(구로IL)
  - ▶ 장애인식개선 동화 '웃는 책'(성북IL)
  - ▶ 홈클리닝 사업(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'숨')

### ○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프로그램 운영 : 5개소, 48백만원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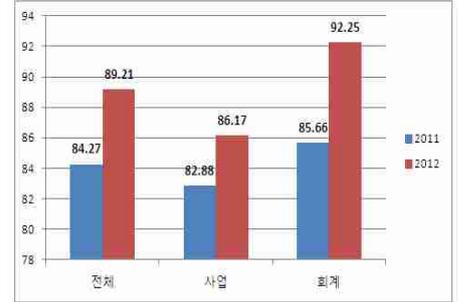
- 기간 : 2012년 4월 ~ 12월
- 내용 : 자립생활체험프로그램 5개소 운영
  - ▶ 5개 단체 (광진IL, 서초IL, 양천IL, 서울IL,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)
- 실적
  - ▶ 연간 입주자 : 13명(평균 2.6명), 퇴거자 : 9명
  - ▶ 현원 : 4명(1개소 공실), 자립실적 : 5명(38%)
- 주요 사업 : 금전관리 훈련(서초 IL), 대중교통 이용해서 1박2일 여행하기(광진 IL) 등

### ○ 2012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평가 : 24개소

- 기간 : 2012년 8월 ~ 12월
- 대상 : '1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IL센터 24개소
- 주체 : (재)서울시복지재단
- 방법 : 사업평가(5개 영역, 20개항목)와 회계평가(4개 영역, 23개 항목)지표에 의거 사업수행단체의 실적보고서와 회계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한 평가

## ※ 2012년 IL센터 지원사업 평가 결과

- '12년 IL센터 지원사업 평가결과 2012년 전체 평균은 89.21점으로 2011년 84.27점 보다 4.94점 상승함
- 사업영역 평균 점수가 82.88점에서 86.17점으로 3.29점 높아졌으며, 회계영역은 85.66점에서 92.25점으로 6.59점 높아졌음
- 전체 기관의 평가점수 분포는 A등급 11개소(45.8%), B등급 10개소(41.7%), C등급 3개소 (12.5%) 순으로 나타남



【'11년, '12년 평가 종합점수 비교】

### 【종합점수 등급표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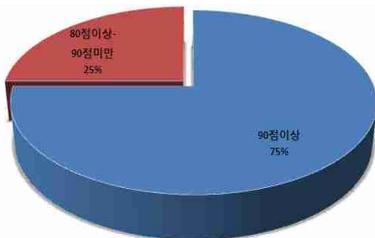
구분		90점이상	80점이상 - 90점미만	70점이상 - 80점미만	70점미만	합 계
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 총점	개소	11개	10개	3개	0개	24개
	등급	A	B	C	D	
	비율	45.8%	41.7%	12.5%	0%	100%

- 사업영역의 경우 평가대상시설 24개소 중 19개소가 80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적정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
- C, D 등급으로 평가 된 센터 총 5개소 중 12년 신규 지원센터가 1개소, 기존 지원을 받던 센터가 4개소로 신규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기존 지원을 받는 센터들도 사업 개선 노력이 필요함.



【사업영역 평가 결과】

- 회계영역의 경우 평가대상 24개 센터 중 A등급 18개소, B등 6개소로(C등급,



【회계영역 평가 결과】

D등급 없음) 총점 100점에서 90점 이상을 득한 기관이 전체 18개소(75%)로 전반적인 회계관리가 우수하였음

- 정기적인 평가와 전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센터별 회계 관리 능력이 상향평준화 된 것으로 판단됨

## □ 문제점 및 개선방안

###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

- 장애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1자치구에 1센터 지원

▪ 장애 인구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등 지원 기준 마련

✓ 1자치구 1센터(현행) ⇒ 장애 인구 약 2만명 자치구 2센터(개선)

※ 장애인구 약 2만명 자치구 7개소(중랑, 노원, 은평, 강서, 관악, 송파, 성북)에 지원대상 센터 1개소 확대

- 1년 마다 공모로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과 센터 운영의 안정성 미확보

▪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원기간 확대

✓ 사업기간 : 3년(현행 1년 ⇒ 개선 3년)

※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(단,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)

- 다양한 IL센터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IL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

▪ 2011년에 지원받던 센터 중 87.5%가 2012년에도 지원받고 있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은 담보되나 신규IL센터가 진입할 여지가 없음

▪ 지원받지 못하는 IL센터는 사업평가나 교육 등에서 배제되어 사업추진 역량과 회계관리 능력 부족으로 계속 지원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

✓ 지원대상 센터 확대 : 육성형 IL센터 2개소 추가 지원

※ 육성형 IL센터 지원 : 100백만원 = 50백만원 × 2개소

- IL센터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가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IL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한 자립생활 서비스 개발 필요

▪ IL센터의 주요 사업이 지체(뇌병변) 장애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모든 장애인들이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외 타 유형의 장애인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IL 시범사업 추진

✓ 소수 장애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L센터 1개소 지원

※ 사업비 : 150백만원 = 150백만원 × 1개소(국비 40%, 시비 60%)

## 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

- 대기자 관리가 미흡하여 공실 발생이 잦고 사업비 불용액이 과다함

- ▶ 분기별 실적 및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절차 확행
  - ✓ 공실 발생 시 일할 계산하여 보조금 미지급(단, 입·퇴거자의 정리기간 공휴일 포함 7일까지 공실 허용)
- ▶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회의 분기별 1회 개최 : 운영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 발굴

- 입주자 관리에만 치우쳐 단기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한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체계화 필요

- ▶ 퇴거한 장애인이나 단기체험 장애인에 대한 추적 관리 강화
  - ✓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과 정보 공유 기회 등 제공
- ▶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정책 필요
  - ※ 2012년부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체험홈(자립생활가정) 퇴소자는 우리시 전세주택 제공사업의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음

## ③ 사업 평가

- 사업 중간 모니터링 강화와 평가 결과 활용 방법 마련

- ▶ 사업 추진기간 중 중간 점검으로 사업 추진의 방향성 제고
  - ✓ 상반기 모니터링 연 1회 실시
- ▶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제공과 부진센터에 디센티브 부여로 IL센터 역량 강화
  - ✓ 우수 센터 : 직원 자기개발비 및 평가 결과보고회 준비 비용 등 성과급 지급
  - ✓ 부진 센터 : 역량강화 교육에 부진시설 의무 참여, 3년간 평균 평가 결과가 미흡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다음번 공모사업 참여 자격 박탈
- ▶ 평가 결과보고회 연 1회 개최
  - ✓ 결과보고서 배포, 우수사례 발표 및 센터운영개선을 위한 토론 등

- 매해 개선·보완되는 평가 지표를 평가시기가 임박하여 공지해서 IL센터의 사전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, 평가지표의 변경이 있을시 센터 운영의 혼선을 초래함

- ▶ 평가 지표 변경을 가급적 지양하고, 향후 평가부터는 IL센터 운영과 평가에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

### Ⅲ

## '13년 추진계획

### □ 추진배경 및 방향

-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사회통합 욕구 증대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
  - 재활서비스→자립생활서비스, 공급자중심→소비자중심, 장애인당사자 역할강조
- 신규지원센터 및 평가 결과 부진 시설 관리 및 피드백을 통한 사업 추진 방향 개선 지원
-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체계적·객관적 운영 지원

### □ 세부 추진계획

#### ① 2013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(IL)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계획

- 사업기간 : 2013년 1월 ~ 2015년 12월(3년간)

#### - 유의사항 -

-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
- 사업기간 내에, 센터의 회계부정,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
→ 차기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박탈

- 공 고 일 : 2013년 2월 4일(월)

- 공고방법 :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(<http://friend.seoul.go.kr>) 게재, 자치구 및 단체 공문 발송 등

- 사업설명회 : 2월 5일(화), 본관(신청사) 3층 대회의실

- 지원규모 : 34개 센터(3,730백만원)

- 공모 분야

####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 : 33개소(국고지원 6개소, 시비자체지원 27개소)

- 국고지원 : 확대형(6개소), 시비자체지원 : 표준형(25개소), 육성형(2개소)

#### ②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 (시범사업) : 1개소

- 아래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센터

- ▶ 유급장애인직원(센터장 포함하되, 활동보조서비스 담당 직원 제외) 중 지체(뇌병변 포함) 장애인의 비율 50% 이하

- ▶ 기본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자 중 지체(뇌병변 포함) 장애인 비율이 50% 미만

- 지원 세부 내역 -

- 국고지원센터 : 7개소, 1,230백만원
  - 확대형 IL센터 : 1,080백만원 = 180백만원 × 6개소
  -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(시범) : 150백만원 = 150백만원 × 1개소
- 시비지원센터 : 27개소, 2,500백만원
  - 표준형 IL센터 : 2,400백만원 = 96백만원 × 25개소
  - 육성형 IL센터 : 100백만원 = 50백만원 × 2개소

○ 신청자격(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센터)

-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·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·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·등록된 단체
- 사업운영·관리 능력을 구비한 센터
  - ▶ 필수인력 : 소장 1인, 사무국장 1인, 동료상담가 1인, 행정지원인력 1인 등 최소 4인 이상으로 인력구성
  - ▶ 운영위원회(또는 이사회) 구성·운영 :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
-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센터
-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을 3개 이상 실시하는 센터
  - ▶ 동료상담, 자립생활기술훈련, 정보제공, 권익옹호 사업
-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 외 기타사업을 1개 이상 실시하는 센터
  - ▶ 본 사업의 지원비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불가

○ 접 수

- 접수기간 : '13년 2월 4일(월) ~ 18일(월), 근무 시간 내 접수
- 접 수 처 :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
  - ※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는 받지 않음)
- 제출서류
  - 신청서 1부(소정양식)
  - 사업계획서(3년간의 사업계획 제출)
  - 법인 및 단체 현황, 최근 2년간 사업실적(소정양식)
  -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, 법인허가(인가)증 또는 등록증 사본, 민간단체등록증 사본
  -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1부
  - 제출서류 수록 파일(한글파일) 1부

○ 선정절차 및 일정



○ 선정방법 :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

- 공통 유의 사항 -

- 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
- 2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서 지원해야 하고 중복 지원 불가

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

- 본 분야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 중 1자치구 1센터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단, 장애 인구수가 약 2만 명인 자치구는 1개 센터 추가 지원
  - ※ 장애 인구수 약 2만명 자치구(7개소) : 중랑, 노원, 은평, 강서, 관악, 송파, 성북
- 국비·시비 지원센터 선정기준은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 결정
  - 1 ~ 6위까지 국비지원센터를 우선 선정
  - 나머지는 고득점 순으로 시비지원 결정선정된 센터 중 최하위 점수의 센터는 육성형으로 지원

-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 선정 유의사항 -

- 심사 평균 점수 미달(60점 미만) 센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, 장애 인구수가 1만 5천명 이상인 자치구의 센터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

②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

- 본 분야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 중 최고점 센터 1개소 선정

-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 선정 유의사항 -

- 『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』에 선정되지 못한 센터는 『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』로 재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(시비 지원만 가능함)
- 단,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『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』로 선정될지라도 가급적 소수장애인 대상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
- ※ 심사 평균 점수 미달(60점 미만) 센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○ **심사계획**

- **적격심사**

① 자치구 적격심사 :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

② 서울시 적격심사 :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,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

- 제1차 심사(개별서면심사) :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개별 서면 심사

※ 신청내용 등 심사 자료는 심의위원에게 사전 배포 계획임

- 제2차 심사(종합심사) : 1차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

○ **심사방법 :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**

- 교수,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(심사위원 별도 구성)

○ **심사기준 : 심사기준(100점 만점)에 의하여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**

- 심사항목 : 사업수행능력, 사업계획능력, 회계투명성 및 기타

➢ 특화사업(사례관리,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)에 대한 계획이 우수할 시 가산점 부여

※ 향후 세부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

○ **심사위원 수당 : 1,800천원**

- 서면심사 : 70천원 × 3일 × 5명 = 1,050천원

- 종합심사 : 150천원 × 1일 × 5명 = 750천원

② **교육 및 평가를 통한 IL센터 역량 강화**

○ **IL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: '13. 4월**

- 대 상 : 평가 부진 센터 및 신규센터의 센터장 및 종사자

- 교육내용 : 회계 및 사업 추진 방법 등 실무중심교육 추진

○ **사업 중간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: '13. 6 ~ 12월**

- 평가기관 : 서울시 복지재단 위탁평가

➢ '13년 3월 중 서울시복지재단과 수의협약 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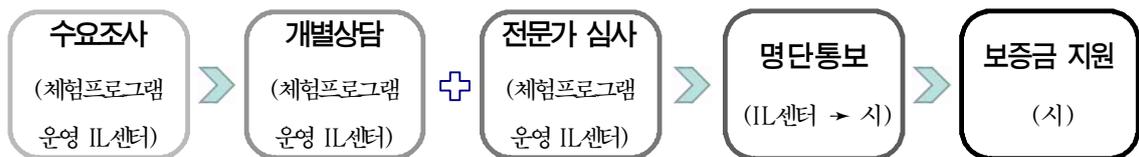
- 대 상 : '1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IL센터 34개소
- 내 용 : 1년간의 사업수행단체의 사업 실적과 회계서류 평가
  - ※ 역량강화교육 및 사업 평가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

**- 주요 개선 내용 -**

- 사업수행능력 상향평준화를 위한 평가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제공 및 부진센터에 디센티브 부여
  - 우수 센터 : 직원 자기개발비 및 평가 결과보고회 준비 비용 등 성과급 지급
  - 부진 센터 : 역량강화 교육 의무 참여, 3년간 평균 평가결과 부진 시 다음 공모사업 참여 자격 박탈
- 사업 추진 중간 모니터링 연 1회 실시 : 6 ~ 7월 중
- 평가 결과보고회 연 1회 개최 : '14년 1월 중

**③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**

-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연계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
  - 지원 금액 : 1가구당 70백만원 ~ 80백만원 지원(전세주택 보증금)
    - 2인 이하 가구 : 70백만원 이하, 3인 이상 가구 : 80백만원 이하
  - 지원기간 : 2년 원칙,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(최장 6년)
  - 선정대상 : 체험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장애인 중 자립의지가 있고 전문가 심사에서 자립생활이 적격한 것으로 선정된 자



※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

- 대기자 관리 및 사례 관리 체계화로 운영 활성화
  - 분기별 실적 및 정산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
    - ※ 공실 발생 시 일할 계산하여 보조금 미지급(단, 입·퇴거자의 정리기간 공휴일 포함 7일까지 공실 허용)
- 중증 장애인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회의 분기별 1회 개최 : 우수사례 공유

## IV '13년 예산 집행 계획

예산 총괄 : 3,840,720천원

(단위 :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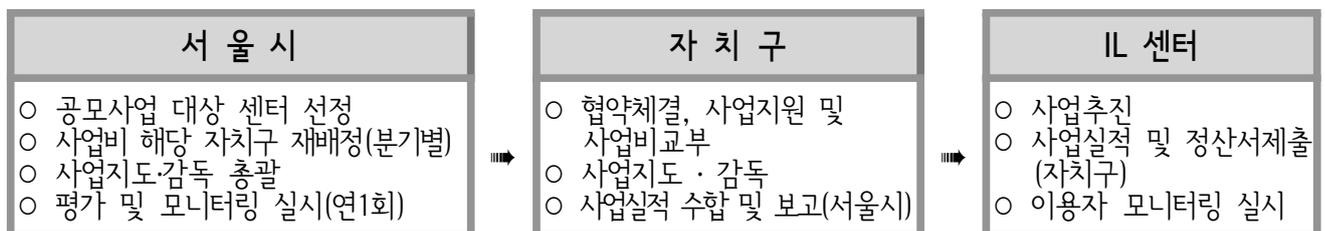
계	IL센터 사업비	공모사업 심사비 (수당, 자료 인쇄 등)	체험프로그램 사업비	IL사업 평가비	IL사업 평가 성과급 등	기타 (업무추진비)
3,840,720	3,730,000	2,520	60,000	22,000	18,000	8,200

- IL센터 34개소 사업비 : 3,730백만원(국비 : 420백만원, 시비 : 3,310백만원)
  - 국고지원센터 : 7개소, 시비지원센터 : 27개소 사업비
  - 시 ⇒ 자치구 ⇒ 센터 (분기별 신청에 의거 자치구로 재배정)
- 공모사업 심사비 : 2,520천원(시비 100%)
  - 위원 수당 : 1,800천원
  - 심사자료 등 인쇄비 : 720천원
- 중증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사업비 : 60백만원(시비 100%)
  - 5개소 × 12백만원 = 60백만원
  - 시 ⇒ 센터 (분기별 실적·정산 보고 및 신청에 따른 사업비 교부)
- IL사업 평가비 : 22백만원(시비 100%)
  - '13년 3월 중 서울시복지재단과 수의계약 체결(별도 사업계획 수립)
- IL사업 평가 성과급 : 18백만원(시비 100%)
  - '13년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센터 인센티브 지급(별도 사업계획 수립)

## V 행정 사항

시 ↔ 자치구 ↔ IL센터간 연계 강화

- 보조금 불법사용, 유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



○ **서울시**

- '13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: 시 → 자치구
  - '12년 IL 사업 평가 결과 통보
- 공모사업 대상 IL센터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: 시 → 자치구
-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수합 : 시 → 자치구

○ **자치구**

- 신청접수 및 접수결과(서류) 서울시로 제출 : 2. 19 한
  - 현장 확인으로 센터의 운영 여부, 이사회 회의록상 사업지원 여부 등 확인
- 센터와 협약(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 징구) 및 사업비 교부
- 연간 1회 이상 수시·정기 지도 감독 실시 및 결과 보고 : 자치구 → 시
-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: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
-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: 다음연도 1월 10일 까지

○ **IL센터**

-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추진 : IL센터 → 장애인
- 세부사업계획서 제출,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: IL센터 → 자치구
-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: IL센터 → 자치구

□ **주요사업 추진일정**

- **2013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공모계획 수립** : '13. 2. 4.(월)
  - 공모계획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: 2월 4일 ~ 18일(15일간)
- **공모사업 설명회** : '13. 2. 5.(화)
  - 일시 : 10시 30분 ~ 12시, 장소 : 본관(신청사) 3층 대회의실
- **서면심사 및 선정심사** : '13. 2. 25 한
- **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** : '13. 2. 28 한
- **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비 재배정** : '13. 3월 초
- **역량강화 교육 실시** : '13. 4월 중
- **사업추진 중간 모니터링** : '13. 6 ~ 7월 중
- **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회** : '13. 8 ~ '14년 1월

- 붙임 : 1. 평가 결과 보고서 1부.  
2. 공고문(안) 1부.

붙임 1)

□ 평가점수 및 등급

○ 단체별 평가점수 및 등급

연번	기관명	2012년						2011년			
		사업 분야		회계 분야		최종결과		사업	회계	최종	등급
		점수	등급	점수	등급	점수	등급				
1	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	100.00	A	96.00	A	98.00	A	97.00	92.00	94.50	A
2	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	99.50	A	96.00	A	97.75	A	87.25	83.50	85.38	B
3	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	93.50	A	100.00	A	96.75	A	91.25	96.84	94.05	A
4	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	95.00	A	96.00	A	95.50	A	-	-	-	-
5	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	94.00	A	96.00	A	95.00	A	93.75	83.50	88.63	B
6	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	96.00	A	92.00	A	94.00	A	92.50	84.21	88.36	B
7	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	89.00	B	96.00	A	92.50	A	87.75	87.00	87.38	B
8	중증장애인독립생활현대	92.00	A	92.00	A	92.00	A	91.25	86.00	88.63	B
9	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[숨]	87.00	B	96.00	A	91.50	A	88.75	88.42	88.59	B
10	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	94.00	A	88.00	B	91.00	A	92.50	88.00	90.20	A
11	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	88.00	B	94.00	A	91.00	A	84.25	68.42	76.34	C
12	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	87.50	B	92.00	A	89.75	B	85.75	86.00	85.88	B
13	강서갈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	91.00	A	88.00	B	89.50	B	87.00	88.42	87.71	B
14	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	89.00	B	90.00	A	89.50	B	-	-	-	-
15	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	88.00	B	90.00	A	89.00	B	87.25	86.00	86.63	B
16	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	80.00	B	98.00	A	89.00	B	90.25	85.26	87.76	B
17	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	87.00	B	90.00	A	88.50	B	-	-	-	-
18	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	87.00	B	88.00	B	87.50	B	80.50	94.50	87.50	B
19	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	87.00	B	88.00	B	87.50	B	75.00	83.50	79.25	C
20	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	78.50	C	92.00	A	85.25	B	73.50	88.00	80.75	B
21	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	69.50	D	98.00	A	83.75	B	83.50	84.21	83.86	B
22	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	73.50	C	82.00	B	77.75	C	80.75	87.00	83.88	B
23	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	64.50	D	86.00	B	75.25	C	36.00	70.00	53.00	D
24	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	57.50	D	90.00	A	73.75	C	-	-	-	-
평균 점수		86.17	B	92.25	A	89.21	B	82.88	85.66	84.27	B

A      B  
 C      D

○ 평가영역별 평가등급

그룹	사업평가	회계평가
A등급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 9개소 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</li> <li>·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 18개소 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[숨]</li> <li>·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</li> <li>·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</li> </ul>
B등급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 10개소 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[숨]</li> <li>·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 6개소 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/ul>
C등급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 2개소 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 0개소 】</b></p>
D등급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 3개소 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</li> <li>·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 0개소 】</b></p>

## 붙임 2)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- 호

# 2013년 『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』 지원사업 모집 공고(안)

서울특별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3년 2월 4일

서울특별시

### 1. 신청 자격(아래의 가 ~ 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IL센터)

- 가.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
- 나.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·등록된 단체이며
- 다. 사업운영·관리 능력을 구비한 센터
  - 필수인력 : 소장 1인, 사무국장 1인, 동료상담가 1인, 행정지원인력 1인 등 최소 4인 이상 인력구성
  - 운영위원회(또는 이사회) 구성·운영 :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
- 라.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(동료상담, 자립생활기술 훈련, 정보제공, 권익옹호)을 실시하는 센터
- 마.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 외 선택사업을 1개 이상 실시하는 센터(활동보조서비스제외)

### 2. 지원 분야

- 가.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 : 33개소(국고지원 6개소, 시비자체지원 27개소)
  - 국고지원 : 확대형(6개소), 시비자체지원 : 표준형(25개소), 육성형(2개소)
- 나.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 (시범사업) : 1개소
  - 아래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센터
    - ▶ 유급장애인직원(센터장 포함하되, 활동보조서비스 담당 직원 제외) 중 지체(뇌병변 포함) 장애인의 비율 50% 이하
    - ▶ 기본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자 중 지체(뇌병변 포함) 장애인 비율이 50% 미만

### 3. 사업 기간 : 2013년 1월 ~ 2015년 12월(3년간)

#### - 유의사항 -

-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
  - 사업기간 내에, 센터의 회계부정,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
- 차기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박탈

#### 4. 지원 규모 : 34개 센터(3,730백만원)

##### - 지원 세부 내역 -

- 국고지원센터 : 7개소, 1,230백만원
  - 확대형 IL센터 : 1,080백만원 = 180백만원 × 6개소
  -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(시범) : 150백만원 = 150백만원 × 1개소
- 시비지원센터 : 27개소, 2,500백만원
  - 표준형 IL센터 : 2,400백만원 = 96백만원 × 25개소
  - 육성형 IL센터 : 100백만원 = 50백만원 × 2개소

#### 5. 사업 설명회 : 2013년 2월 5일(화) 10시 30분 ~ 12시, 본관(신청사) 3층 대회의실

#### 6. 신청기간 및 접수

가. 접수기간 : '13년 2월 4일(월) ~ 18일(월), 근무 시간 내 접수

- 접수처 :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

※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

나. 접수방법 :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,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(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)

#### 7. 신청 서류 (각 10부 - 제출) ※ 작성양식은 우리시 장애인홈페이지 <http://friend.seoul.go.kr>에 게시

가. 신청서 1부(소정양식)

나. 법인 또는 단체현황, 최근 2년간 사업실적(소정 양식)

다. [사업계획서 1부\(3년간의 사업계획 제출\)](#)

라.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,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)

마.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

(이사회 회의록에는 2013년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

바. 제출서류 수록 파일(한글파일) 1부

#### 8. 선정방법

-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

##### - 공통 유의 사항 -

- 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
- 2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 지원해야 하고 중복 지원 불가

#####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

- 본 분야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 중 1자치구 1센터 선정을 원칙 으로 하되

단, 장애 인구수가 약 2만 명인 자치구(7개소)는 1개 센터 추가 지원

※ 장애 인구수 약 2만명 자치구('12년 12월 말 기준) : 노원, 강서, 은평, 관악, 송파, 중랑, 성북

- 국비·시비 지원센터 선정기준은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 결정
  - > 1 ~ 6위까지 국비지원센터를 우선 선정
  - > 나머지는 고득점 순으로 시비지원 결정(선정된 센터 중 최하위 점수의 센터는 육성형으로 지원)

**-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 선정 유의사항 -**

- 심사 평균 점수 미달(60점 미만) 센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, 장애 인구수가 1만 5천명 이상인 자치구의 센터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

②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

- 본 분야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 중 최고점 센터 1개소 선정

**-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 선정 유의사항 -**

- 『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』에 선정되지 못한 센터는 『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』로 재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(시비 지원만 가능함)

단,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『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』로 선정될지라도 가급적 소수장애인 대상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

※ 심사 평균 점수 미달(60점 미만) 센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## 9. 심사계획

- 적격심사

- ① 자치구 적격심사 :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
- ② 서울시 적격심사 :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,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

- 제1차 심사(개별서면심사) :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개별 서면 심사

- 제2차 심사(종합심사) : 1차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

## 10. 심사방법 :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

- 교수,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(심사위원 별도 구성)

## 11. 심사기준 : 심사기준(100점 만점에 의하여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

- 심사항목 : 사업수행능력, 사업계획능력, 회계투명성 및 기타

※ 특화사업(사례관리,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)에 대한 계획이 우수할 시 가산점 부여

## 12. 기타사항

- 최종선정결과는 2013. 2월말(예정)로 해당 센터 및 자치구에 개별 통지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(☎ 2133-74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